

결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재심3
(원심 : 제9회 지선-시심7)

재 심 청 구 인 최영일
전북

재심청구대상 [별지] 기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제9회 지선-시심7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 중 특히 5월 27일자 15면 「지방선거를 잘 합시다」 제하의 기고문(이하 ‘해당 기고문’이라 한다)과 같은 날짜의 1면 「투표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하의 기사(이하 ‘해당 기사’라 한다)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시기인 사전투표 2일 전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상대 측 후보의 평균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최종 선거에서 많이 득표한 것은 해당 보도들이 상대 측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기고문에서 일부 표현을 보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고, 제8회 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유사한 기고문에 대해 주의 조치로 의결한 바 있으며 당시보다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 ‘선출직 정치인’ 등의 표현은 현직 군수를 연상케 하며, 현직 군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재심청구대상 기사로 인해 상대 후보의 득표율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내용은 재심청구인이 원심 청구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원심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였고 당시 위원회는 의견 표현의 수위와 양 당사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상 언론보도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문이 표방·지향하는 경향과 논조에 입각하여 선거 후보자에 관해 논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인데,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해당 기고문과 해당 기사의 일부 표현 수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원심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30.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2월 11일자 12면 「섬김과 진심의 정치로 순창을 더 크게!」 제하의 광고
2. 2026년 3월 4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친동생, 쌍치 방산 하천부지 불법·무단 사용」 제하의 기사
3. 2026년 3월 4일자 2면 「최영일 군수, 불법·파렴치범…부적격 단체장 지목돼」 제하의 기사
4. 2026년 3월 4일자 2면 「오은미 도의원, 출판 기념식 ‘오은미의 꿈’ 전해」 제하의 기사
5. 2026년 3월 11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친동생, ‘불법 시인」 제하의 기사
6. 2026년 3월 18일자 1면 「최영일 군수 동생, 소나무 40여 그루 ‘불법 반출」 제하의 기사
7. 2026년 3월 18일자 1면 「최영일 군수, 2022년 군수 선거 ‘펀드 미상환’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8. 2026년 4월 29일자 1면 「오은미 군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제하의 기사
9. 2026년 4월 29일자 1면 「오은미 군수 예비후보 기자회견 최영일 군수 관련 4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10. 2026년 5월 6일자 1면 「옥천인재숙 사생수척 인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11. 2026년 5월 6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오은미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제하의 기사
12. 2026년 5월 13일자 1면 「최영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 제하의 기사
13. 2026년 5월 13일자 1면 「군민 23명, 최영일 군수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14. 2026년 5월 20일자 1면 「군민 25명, 최영일 군수 후보 고발」 제하의 기사
15. 2026년 5월 27일자 1면 「투표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하의 기사
16. 2026년 5월 27일자 1면 「최영일 후보 ‘학력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17. 2026년 5월 27일자 15면 「지방선거를 잘 합시다」 제하의 기사